

수원고등법원 2023. 9. 20 선고 2022나27143(본소), 2022나27150(반소) 판결
[물품대금 ·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전창은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형수, 전준오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9. 20.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1. 10. 선고 2021가합7891(본소),
2021가합7907(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3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26.부터,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27.부터,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2.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94,2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1).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글상자 안 하 제5행의 “다하거나”를 “당하거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하 제3행의 “귀 끈” 앞에 “마스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하 제3행의 “감정인 C”을 “제1심 감정인 C(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8~9행의 “감정결과”를 “보완감정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1행, 제11면 제2행의 각 “귀 끈 초음파 장치”를 “귀 끈 초음파 접착 장치”로 각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1행의 “이해지체로”를 “이행지체로”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감정인의 2022. 5. 20.자 감정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기계는 주름 및 귀 끈 융착 지점 문제로 판매가 어려운 마스크를 생산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 통보 당시 제작이 완료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마스크 디자인을 수정하고 귀 끈 초음파 접착 장치, 마스크 이송 부분 가이드 브라켓 등의 위치를 조정하자 판매 가능한 마스크가 생산되었다’는 감정인의 2022. 9. 13.자 보완감정결과는 피고에게 마스크 디자인 변경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문제 해결에 불과하여 고려대상이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의 영상, 감정인의 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해제 통보 당시 이 사건 기계가 주름 및 귀 끈 융착 지점에 문제가 있는 마스크를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문제들은 원고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거나 귀 끈 초음파 접착 장치 등의 위치 조정을 통해 어렵지 않게 시정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해제 통보 당시 이 사건 기계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지 않았거나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15개의 십자 도트 융착점’이 들어간 디자인의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는 피고가 원하는 위와 같은 디자인의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계를 제작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기계는 위 디자인의 마스크를 주름 없이 생산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기계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후 원고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마스크 디자인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2020. 10. 8.이 되어서야 마스크 도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2023. 9. 6.자 참고서면에서 2020. 9. 3. 마스크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20. 10. 8. 발송한 이메일(갑 제14호증) 및 그 무렵 원 · 피고 담당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갑 제13호증의 제25면)에 비추어 보면, 2020. 10. 8. 이전까지 마스크 디자인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 측 담당자 D이 2020. 9. 23. 원고 측 담당자 E과 마스크 주름 등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단이 문제라고 하면 이제, 마크가 문제라고 하면 마크를 없애는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다 한번 돌려보면 원단이 이상이 없다, 아니면 그럼 이제 마크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 마크를 없애버리고 하면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라고 말한 것을 보면(갑 제13호증의 제3~4면), 피고 측도 필요한 경우 마스크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계약은 기존에 제작된 마스크 제조설비를 일부 개조하여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기계를 통하여 생산할 수 있는 마스크 디자인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원하는 디자인이 ‘15개의 십자 도트 융착점’이 들어간 마스크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원고에게 ‘15개의 십자 도트 융착점’이 들어간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계의 제작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는, 다른 업체로부터 구매한 마스크제조설비로 ‘15개의 십자 도트 융착점’이 들어간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도 제1심의 보완감정 당시 생산한 디자인의 마스크(네 모퉁이에 위치한 융착점 4개를 삭제한 ‘11개의 십자 도트 융착점’이 들어간 마스크)를 생산 ·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갑 제17호증), 기존에 제작되어 있던 기계를 개조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과 피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마스크제조설비를 구매한 계약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기계가 ‘11개의 십자 도트 융착점’이 들어간 디자인의 마스크를 문제없이 생산할 수 있는 이상 ‘15개의 십자 도트 융착점’이 들어간 디자인의 마스크를 주름 없이 생산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완성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해제 통보 당시까지 귀 끈 접착 지점 불량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시까지 이 사건 기계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피고에게 인도한 후 세부 세팅 과정을 거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측 담당자인 E도 피고가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기계의 인수를 거부하자 피고 측 담당자에게 이 사건 기계의 출고 전에는 작동 여부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인도 후 1주일 가량 세부 세팅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말하였던 점{녹취록(갑 제13호증) 제11, 36~37, 42면}, ③ 원고는 2020. 9 ~ 10.경 피고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기계로 마스크를 생산해 본 것을 마스크의 시험생산 정도로 이해하여 이 사건 기계를 인도·설치 후 이루어져야 하는 정도의 세부 세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어디까지 제가 세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는 원고 측 담당자 E의 진술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녹취록(갑 제13호증) 제39면}], ④ 제1심 보완감정은 이 사건 기계의 귀 끈 초음파 접착 기구 및 마스크 이송 부분 가이드 브라켓의 위치를 조정한 뒤 이루어졌는데, 최초 감정 당시에도 감정인이 원고에게 위 장치들을 추가적으로 조정·수정할 것인지를 물어본 사실2) 에 비추어 보았을 때(감정인의 2022. 5. 20.자 감정서 제42면) 그 조정에 과다한 시간이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귀 끈 융착 지점 불량 현상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여 세부 세팅 과정을 거쳤다면 해결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 당시 귀 끈 융착 지점 불량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기계가 완성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남양우, 판사 강은주, 판사 김건우

1) 피고는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는 기재를 누락하였으나, 피고의

항소이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선택한다.

2) 원고는 위 최초 감정 당시 귀 끈 초음파 접착 기구 등을 추가적으로 조정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기계 인수를 거부할 당시 주장한 하자는 이 사건 기계가 생산한 마스크의 턱과 코 부분 융착이 약하고, 귀 끈이 융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므로, 위 감정 당시 그러한 하자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에만 치중하느라 상대적으로 귀 끈 융착 지점 조정을 위한 세부 세팅에 소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원고 측 담당자인 E이 2020. 9. ~ 10.경 피고 측 담당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지적사항 중 마스크 융착 강도, 귀 끈 융착 여부에 중점을 두어 이 사건 기계를 수정해왔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3) 피고는 2023. 9. 6.자 참고서면에서 당초 원고와 피고는 4겹의 원단의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계를 제작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제1심 보완감정시 4겹 원단으로 생산한 마스크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위 주장에 관한 추가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